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10.11)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용모

목 차

1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3
2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조례안 -----	7
3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10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2. 제정이유

- 가. 거창군의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 나.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등록을 함에 따라 그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브랜드 사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7조)
 -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 무료
 - (2)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 3/1,000
 -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무료
- 나. 사용 신청·승인·기간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6조)
- 다. 브랜드 사용의 책임, 사용승인 취소, 사후관리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 라. 청문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마. 「거창군 농·특산물 고유상표 및 포장디자인 관리운영 조례」 폐지함(안 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상표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9.2.~2013.9.2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거창군에서는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2년 6월 『거창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2013년 6월 27일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등록을 함에 따라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이며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브랜드 사용 대상을 농·특산물, 공산품 등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브랜드 사용신청, 사용승인, 사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하여 금액과 신고, 세입처리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 부터는 브랜드 사용의 책임, 사용승인 취소, 사후관리, 청문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부칙에서는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규정함

다. 본 제정 조례는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상표법」, 법률 제11747호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포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2. 제정이유

-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하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의식개혁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범군민의식개혁운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102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9. 12. ~ 10. 0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5. 검토의견

가. 거창군에서는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 함양,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는 전통적 가치관의 재조명으로 인간중심의 사회 구현, 전국 상위 10% 이내 명품 자치단체 진입 달성 등을 목표로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식개혁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 친절거창운동 추진사업, 아립1004운동 추진사업 등 세가지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음.
- 안 제5조, 제6조는 재정적 지원과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다. 본 제정 조례는 거창군의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이 저변확산을 통해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민간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11호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2 제안이유

- 가.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조 관련기관인 법원, 검찰, 교정시설의 타운화를 추진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을 이전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3차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현황

필지수	지목별(m ²)			소유자별(m ²)				
	계	전	임	계	사유	재단	종중	종무
27	33,000	18,429	14,571	33,000	18,984	10,346	3,324	346

※ 필지별 세부현황 : 붙임 1 참조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24번지 일원에 교정시설 포함 196,000㎡의 면적으로 법원, 검찰청, 주차장, 공원, 부대시설, 체육시설, 완충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신축부지 33,000㎡가 필요함.
- 나. 그 동안 법무부 기본조사용역, 거창교정시설 입안제안서 제출,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기재부에 거창지원 이전신축 예산요구 등 가시적인 진행이 있음.
- 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비를 정부의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관련 부지를 조기에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임.
- 라. 따라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갖는 상주인구 증가(교정 공무원 200여명 증가),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취득재산의 표시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3,000	765,704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259	3,134	2013 ~ 2014	법조타운 조성 (거창지원 · 지청이전)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041	30,605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115	3,795			정귀홍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100	3,430			최삼순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4,129	151,121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281	10,622			박옥자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492	17,860			정귀홍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557	20,386			서정희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917	5,802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54-12	임	8	274			정귀홍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24	840			서정희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123	2,792			장봉수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2,549	61,686	2013 ~ 2014	법조타운 조성 (거창지원 · 지청이전)	장봉수
				거창읍 상림리 410-5	전			25	610			박점수
거창읍 상림리 412-1	전			1,378	33,623	장준석						
거창읍 상림리 412-3	전			397	9,766	이상호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4,958	119,984	김무선						
거창읍 상림리 702-2	전			1,030	24,205	거창읍씨 참여공파종중						
거창읍 상림리 703-3	전			524	13,310	임종훈						
거창읍 상림리 703-6	전			594	14,612	거창읍씨 참여공파종중						
거창읍 상림리 산21-1	임			42	1,058	이상호						
거창읍 상림리 산21-4	임			2,869	72,299	이상호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48	1,094	이원종무						
거창읍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6,794	이원종무						
거창읍 상림리 산24-4	임			4,542	119,909	전영순						
거창읍 상림리 산25-1	임			120	69	거창읍씨 참여공파종중						
거창읍 상림리 산25-7	임			1,580	36,024	거창읍씨 참여공파종중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2 제안이유

- 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등 법조 관련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성산마을을 선정하였음.
- 나. 이에 따라 성산마을 22가구 80여명의 생활 근거지를 옮기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3차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현황

필지수	지목별(m ²)			소유자별(m ²)			
	계	전	도	계	사유	농림축산식품부	종중
5	6,301	5,993	308	6,301	4,699	308	1,294

※ 필지별 세부현황 : 붙임 1 참조

4

관련법규와 조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가.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10번지 일원에 6,301㎡의 면적으로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그 동안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부의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나. 그 동안 사전 주민설명회, 관련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쳤고 양돈과 양계가 주 생업 수단이며 저 소득가구 축사 현대화의 어려움으로 겪는 민원의 해결 등 효과를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 다만,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적극 해소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취득재산의 표시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6,301	163,059			5명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367-10	전	1,294	35,067	2013	법조타운 조성(한센인집단지주)	벽진이씨오류병사중중
		거창읍 가지리 367-11	전	1,587	43,008			이민순
		거창읍 가지리 367-12	전	1,497	39,221			장용태
		거창읍 가지리 367-13	전	1,615	42,313			이운기
		거창읍 가지리 368	도	308	3,450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

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